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1	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1. 제안사유		
○ 우리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내 입목의 우리도 지분 수익 분배금을 적립금으로 운영하여, 공유림 확대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		
2. 주요골자		
○ 분수림설정 수익금의 적립규정 신설(제35조의2제2항) - 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.		
4. 의안전문 : 별 첨		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		
6.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		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2(분수림 설정) 영 제102조 의2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	제35조의2(분수림 설정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②분수림의 수익으로 분배된 수입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.
< 신 설 >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83조의2 (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2조의2(분수립 설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립을 목적으로 공유립에 분수립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립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립자 사이에 이를 분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